

의안번호  
제1369호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명

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2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: 2017. 6. 30.(금)
- 나. 제 출 자 : 강혜순 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0.(월)

## 3. 제안이유

- 현행 중구의회 공인조례를,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 구성 체계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인의 등록·사용에 철저를 기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,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공인 관련 위임법령 및 조항 인용
  - 안 제1조(목적)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 인용
- 나. 조례 구성 체계 등 정비
  - 안 제2조(비치) : 공인 비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 신설
  - 안 제3조 제4항 :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 신설
  - 안 제4조 제3항 :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
  - 안 제6조(등록) : 공인 사무 처리권자 명확하게 하고 전자공인 등록 및 등록 공인 사용 항 신설
  - 안 제8조(사용), 안 제12조(준용)  
: 조례사용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, 순화용어로 개정

## 5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6. 근거법령

- 가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

나.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## 7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6. 14. ~ 6. 20.(7일간), 의견 없음.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 없음.

## 8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,
  - ▶ 조례의 구성 체계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통합 또는 재배열하고
  - ▶ 현재 전자문서에 등록 사용 중에 있으나, 의회 공인조례에는 “전자이미지 공인”의 등록과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공인의 사용 및 등록·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입법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